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8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 1. 제안이유

- 연수원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시의회(교육위 및 예결위)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및 기금명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 나. 기금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58호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연수원 신규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연수원”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연수원 건립에 대한 경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교육청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 제정되었습니다.

**[표-1] 2016년 동 기금 설치 당시 교육청의 건립 계획<sup>1)</sup>**

구분	신청사	연수원
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8 (구 수도여고 부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 (구 신창중 부지)
부지면적	13,180.7㎡	16,335㎡
건축규모	45,665㎡ 내외(지하 2층, 지상 12층)	4,800㎡ 내외
총사업비	1,247억원	97억원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7월, 제주도교육청과 교류·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시 구 신창중 부지를 임대하여 ‘제주평화힐링연수원’을 건립<sup>2)</sup>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는 부지확보 방식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동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sup>3)</sup>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건립 계획에서 위치 등을 변경하고 사업비 12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sup>4)</sup>, 동 연수원 건립사업은 2019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표-2] 2019년도 연수원 건립 변경 계획**

구분	당초 계획	2019년도 변경 계획
위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 (구 신창중 부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84
부지면적	16,335㎡	8,950㎡
건축규모	4,000㎡	6,297㎡
총사업비	98.4억원	224억원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1363호, 2016.8.12. 제출)

2) 보도자료: 서울 교육가족 휴식 등을 위한 ‘제주 연수원’ 들어선다!(제주투데이, 2015.7.29.)

3) 2016.10.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2명 구 신창중 부지 방문, 부지 환경 측면 재검토 의견

4) 의안번호 24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11.1. 제출

[표-3] 2019년도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sup>5)</sup>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제주평화힐링연수원 설립	부적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연수원의 건축규모를 확대하고(6,297㎡→2개동 8,831㎡) 사업비 114억원을 증액(224억원→338억원)하는 것으로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sup>6)</sup>, 동 기금설치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연수원 사업 추진의 재검토 등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sup>7)</sup>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지를 강원도 평창군으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 또한 당초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칭)평창 치유·회복연수원 설립’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연수원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sup>8)</sup>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sup>9)</sup>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이후 현재까지

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6) 의안번호 1206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9.11.1. 제출

7)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2019.11.27.) 회의록 위원 발언 발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주구장창 안 되는 거 자체심사에서도 나왔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문제됐던 것을 또 다시 추진하고, 이거 방향 바꾸면 안 돼요? (중략)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괜찮은 건물을 물색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그런 연수시설을 만들 수 있다.”

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0.11.27.)

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6호, 2020.12.16. 본회의 원안가결)

연수원 건립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 용역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연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조례 개정 및 기금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표-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구분	의견
교육위 예비심사보고서 (2022.11.29.)	(28p.) 등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
예결위 심사보고서 (2022.12.16.)	(19p.) 기금의 제명에는 “신청사”와 “연수원”이 적시되어 있어 현재 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연수원 건립에 대해 가부 결정하여 필요시 기금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2023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신규연수원 건립을 중단하고 직속기관(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sup>10)</sup> 2023년 12월 동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sup>11)</sup>
-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 계획이 2016년부터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특별한 성과없이 연수원 건립이 공전하다가 최근 기존시설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는 바, 이것은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안이한 행정의 모습을 방증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0) 「교직원 치유·회복연수원」 건립 재검토 및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추진 방안(청사이전추진단-986, 2023.9.21.)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청사이전추진단-2025, 2023.12.18.)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연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건립이 백지화된 “연수원”을 삭제함으로써 동 기금이 온전히 신청사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 리모델링에 무려 1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 건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주도 연수원 건립 계획상의 사업비 98억 4천만원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사례와 같이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된 방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성실한 사업 이행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기존 시설 활용 계획<sup>12)</sup>

Ⅲ 구축 방안			
○ (최적 공간)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에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 (조성 방법) 별관동 건물 리모델링(노후 시설개선 및 공간 재구조화)하여 조성			
기관(건물)	사업비 (사업방식)	추진 내역	비고
대천임해 교육원 (별관동)	약 112억 소요 (리모델링)	○ 기존 교직원복지시설(교육가족실 등) 노후 시설개선(리모델링)을 통한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 교육가족실 22실, 생활실 24실(2004년 건축)	

12) 「교직원 치유·회복연수원」 건립 재검토 및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추진 방안(청사이전추진단-986, 2023.9.21.) 1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청사 및 연수원”을 “신청사”로 한다.

제2조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를 “신청사 건립에”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사 및 연수원”을 “신청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u>신청사 및 연수원</u>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u>신청사 및 연수원</u>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u>신청사 및 연수원</u>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u>신청사 및 연수원</u>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신청사</u>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 ----- ----- <u>신청사</u> <u>건립에</u> ----- ----- <u>신청사</u> <u>건립 기금</u>----- -----.</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신청사</u> ----- -----.</p> <p>② (현행과 같음)</p>